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교부세 투자현황 및 투자소요에 맞게 소방안전교부세가 배분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소방 재정 수요의 변화를 교부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교부기준에 소방청사 개선소요 등을 추가하고 소방재정 확대 노력지수로 소방예산관련 교부기준을 통합하며, 노후·부족장비 보강 소요액 등은 교부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외 사용 금액의 감액 규정을 마련하고, 창원시에 정책적 예산지원 확대를 고려하며,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목적인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이월액과 불용액을 줄여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는 등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을 기존보다 더 효율적·효과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변경(안 별표 2 개정)

- 1) 화재위험지수, 소방청사 개선소요, 소방정책수행 노력지수, 소방안전교육확산 노력지수, 화재예방지수, 재난안전전담공무원 수, 예산집행 노력지수 신규로 반영
- 2) 교부기준 중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금액, 소방출동 지수, 안전시설 확충 노력지수,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 반영비율 축소
- 3) 소방예산과 소방 세출결산에 관한 지수인 소방예산 확대 노력지수와 소방정책사업 확대 노력 지수의 통합 및 비율 축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일부개정령안, 별첨

2) 입법예고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제9조 관련)

1. 시·도별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

$$\frac{\text{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 \times \text{해당 시·도의 총원 누적 소방공무원 수}}{\text{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 \times \sum \text{시·도별 총원 누적 소방공무원 수}} \times 100\%$$

2. 시·도별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

$$\begin{aligned} & \text{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times \\ & [\{ (\frac{\text{해당 시·도의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sum \text{시·도별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 \times 12\% \\ & + \frac{\text{해당 시·도의 화재위험지수}}{\sum \text{시·도별 화재위험지수}} \times 3\%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출동 지수}}{\sum \text{시·도별 소방출동 지수}} \times 2\%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청사 개선소요 지수}}{\sum \text{시·도별 소방청사 개선소요 지수}} \times 5\%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공무원 수}}{\sum \text{시·도별 소방공무원 수}} \times 4\%)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지방도로 지수}}{\sum \text{시·도별 지방도로 지수}} \times 6\%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지방하천 지수}}{\sum \text{시·도별 지방하천 지수}} \times 4\%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소요 지수}}{\sum \text{시·도별 안전소요 지수}} \times 2\%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신고 지수}}{\sum \text{시·도별 안전신고 지수}} \times 2\%) \\ & + (\frac{\text{해당 시·도의 특수수요 소요 금액} - \frac{\sum \text{시·도별 특수수요 소요 금액}}{\text{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도 수}}}{\text{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교부} + \frac{\sum \text{시·도별 대상사업 외에 사}}{\text{부 총액}} \text{용한 금액}}) \}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재정 확대 노력지수}}{\sum \text{시·도별 소방재정 확대 노력지수}} \times 13\%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정책수행 노력지수}}{\sum \text{시·도별 소방정책수행 노력지수}} \times 2\%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안전교육 확산 노력지수}}{\sum \text{시·도별 소방안전교육 확산 노력지수}} \times 3\% \\ & + \frac{\text{해당 시·도의 화재예방지수}}{\sum \text{시·도별 화재예방지수}} \times 3\%)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시설 확충 노력지수}}{\sum \text{시·도별 안전시설 확충 노력지수}} \times 4\%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재난안전 전담공무원 수}}{\sum \text{시·도별 재난안전 전담공무원 수}} \times 1\%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지수 개선지수}}{\sum \text{시·도별 안전지수 개선지수}} \times 3\%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신고 개선지수}}{\sum \text{시·도별 안전신고 개선지수}} \times 1\%) \\ & + (\frac{\text{예산집행 노력지수}}{\sum \text{시·도별 예산집행 노력지수}} \times 2\%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sum \text{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 \times 8\%) \\ & + (\frac{(1 - \text{해당 시·도의 재정자주도})}{\sum (1 - \text{시·도별 재정자주도})} \times 20\%)] \\ & - \text{해당 시·도의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end{aligned}$$

3. 시·도별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

$$\frac{\sum \text{시·도별 대상사업 외 사용한 금액}}{\text{대상사업 외 사용한 금액이 없는 시·도의 수}}$$

비고

1. 소방공무원 인건비 산정을 위한 충원 소방공무원 수의 산정기준

가. 충원 누적 소방공무원 수는 소방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라 2017년 하반기 부터 전년도 6월 30일까지 조례에 반영된 소방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한 다.

나. 시·도별 조례에 반영된 소방공무원 충원분의 세부 인정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의 산정기준

가.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은 전전년도에 교부받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과 「지방교부세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을 말한다.

나. 시·도별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은 대상사업 외 사용한 금액이 없는 시·도에만 교부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교부받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사업 외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한 경우에는 시·도별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특수수요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비율에 따라 교부하며, 이 경우,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를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은 해당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 교부한다.

3.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의 산정기준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를 교체·보강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장비명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가.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동장비 중 전년도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경과한 장비

나.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보 통신장비, 보호장비 중 해당 연도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경과하게 되는 장비와 전년도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보유기준 대비 부족한 장비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구조장비 및 구급

장비 중 해당 연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7조제3항 및 제9조 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게 되는 장비와 전년도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보유기준 대비 부족한 장비

라. 가목, 나목, 다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이하 ‘광역시’라 한다)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의 평균 금액의 1/2을 가산한다.

4. 화재위험지수 산정 기준

가. 화재위험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화재위험지수	=	$\frac{\text{해당 시·도의 화재위험시설 수}}{\sum \text{시·도별 화재위험시설 수}}$
--------	---	---

나. 화재위험시설 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위험물제조소등의 총합의 수를 말한다.

다. 총합의 수는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방통계연보에 고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5. 소방출동 지수의 산정기준

가. 소방출동 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소방출동 지수	=	$\frac{\text{해당 시·도의 화재발생 건수}}{\sum \text{시·도별 화재발생 건수}} \times 0.25$
	+	$\frac{\text{해당 시·도의 구조출동 건수}}{\sum \text{시·도별 구조출동 건수}} \times 0.25$
	+	$\frac{\text{해당 시·도의 구급출동 건수}}{\sum \text{시·도별 구급출동 건수}} \times 0.25$
	+	$\frac{\text{해당 시·도의 생활안전출동 건수}}{\sum \text{시·도별 생활안전출동 건수}} \times 0.25$

나. 구급출동 건수는 병원이송 건수를 말하며, 생활안전출동 건수는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의 건수를 말한다.

다. 소방출동 지수는 전 4개년도부터 전 2개년도까지의 3개 연도 소방출동 지수의 연평균으로 산정하며, 소방통계연보에 고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조출동 건수와 생활안전출동 건수 중 중복되는 출동 건수는 구조출동 건수에서 제외한다.

6. 소방청사 개선소요 지수 산정 기준

가. 소방출동 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소방청사 개선소요 지수}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청사 개선소요}}{\sum \text{시·도별 소방청사 개선소요}}$$

나. 소방청사 개선소요는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의 청사 중 노후 및 협소 소방청사의 개소 수에 다음의 분류기준의 보정값을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분류기준		소방서·소방학교	119안전센터 등*	119지역대
보정값	노후 소방청사	0.5	0.3	0.1
	협소 소방청사	0.25	0.15	0.05

*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소방항공대, 소방정대

다. 소방청사 개선 소요 산정시 동일한 부지(지번) 및 시설물에 입주한 하위기관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라. 소방청사는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나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광역시 소방청사 개선 소요 평균 산정값의 1/2을 가산한다.

7.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산정을 위한 소방공무원 수의 산정기준

가. 소방공무원 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말한다.

나. 소방공무원 수는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광역시 각각의 소방공무원 수를 전체 소방공무원 수로 나눈 값을 합산하고 그 합산 값의 평균 1/2을 가산한다.

8. 지방도로 지수의 산정기준

가. 지방도로 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지방도로 지수} = \text{지방도로 위험률} \times 0.7 + \text{지방도로 길이} \times 0.15 + \text{지방도로 교량 및 터널 길이} \times 0.15$$

나. 지방도로 위험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지방도로 위험률} = \text{해당 시·도의 지방도로 1km당 발생한 사망자} \times 0.7 + \text{해당 시·도의 지방도로 1km당 발생한 부상자} \times 0.3$$

다. 지방도로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를 말하고, 사망자 및 부상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를 말한다.

라. 지방도로 길이는 해당 시·도의 지방도로 길이를 말하며,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지방도로 교량 및 터널 길이는 해당 시·도의 지방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 및 터널 길이를 말하며,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바. 지방도로 위험률은 전 4개년도부터 전 2개년도까지의 3개 연도 지방도로 위험률의 연평균으로 산정한다.

9. 지방하천 지수의 산정기준

가. 지방하천 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지방하천 지수} = \text{지방하천 길이(km)} \times 0.5 + \text{지방하천 미정비 길이} \times 0.5$$

나. 지방하천은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을 말한다.

다. 지방하천 길이는 해당 시·도의 지방하천의 길이를 말한다.

라. 지방하천 미정비 길이는 해당 시·도의 미정비[불완전하게 개수(改修)된 것과 개수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지방하천의 양안(兩岸)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지방하천 지수는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0. 안전소요 지수의 산정기준

가. 안전소요 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begin{aligned}
 \text{안전소요 지수} =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자연재해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자연재해 안전지수 등급}} \right. \\
 & + \frac{\text{해당 시·도의 화재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화재 안전지수 등급}} \\
 & + \frac{\text{해당 시·도의 교통사고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교통사고 안전지수 등급}}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사고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안전사고 안전지수 등급}} \\
 & \left. + \frac{\text{해당 시·도의 감염병 안전지수 등급}}{\sum \text{시·도별 감염병 안전지수 등급}} \right) \\
 & \times \left(\frac{1}{\sum \text{공표된 안전지수 등급 갯수}} \right)
 \end{aligned}$$

나. 안전지수 등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지수의 등급을 말한다.

다. 안전소요 지수는 전년도 안전지수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안전지수 등급이 공표되지 않으면 해당 지수는 제외하고 산정한다.

11. 안전신고 지수의 산정기준

가. 안전신고 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begin{aligned}
 \text{안전신고 지수} =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신고율}}{\sum \text{시·도별 안전신고율}} \times 0.3 \right) \\
 &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신고 참여율}}{\sum \text{시·도별 안전신고 참여율}} \times 0.7 \right)
 \end{aligned}$$

나. 안전신고율은 전전년도에 시·도의 인구 천명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신고 건수를 말한다.

다. 안전신고 참여율은 전전년도에 시·도의 인구 천명당 안전신고에 참여한 시·도 국민 중 참여자 수를 말한다.

12. 특수수요 소요 금액의 산정기준

가.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 중 특수수요 대상사업과 소방안전교부세 중 특수수요 대상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특수수요 대상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의 10% 이내로 한다.

나. 시·도별 특수수요 소요 금액은 해당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3. 소방재정 확대 노력지수의 산정기준

가. 소방재정 확대 노력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begin{aligned} \text{소방재정 확대 노력지수} = & \left[\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예산 비율}}{\sum \text{시·도별 소방예산 비율}} \times 0.2 \right) \right. \\ &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예산 개선 비율}}{\sum \text{시·도별 소방예산 개선 비율}} \times 0.2 \right) \\ & \left.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 세출결산 확대 노력 비율}}{\sum \text{시·도별 소방 세출결산 확대 노력 비율}} \times 0.6 \right) \right] \end{aligned}$$

나. 소방예산 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소방예산 비율} = \frac{\text{총 소방예산}}{\text{총 예산}}$$

다. 소방예산 개선 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소방예산 개선 비율} = \frac{\text{소방예산 비율}}{\text{전년도 소방예산 비율}}$$

라. 총 예산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한다.

마. 총 소방예산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소방기관의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한다.

바. 소방 세출결산 확대 노력 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소방 세출결산 확대 노력 비율} = \frac{\text{전전년도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text{전전전년도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

사.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정책사업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과 배상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아.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가목에 따라 산정된 지수의 1/3로 산정한다.

14. 소방정책수행 노력지수의 산정기준

가. 소방정책수행 노력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소방정책수행 노력지수} = \frac{\text{해당 시·도의 국민행복소방정책종합평가 총점}}{\sum \text{시·도별 국민행복소방정책종합평가 총점}}$$

나. 국민행복소방정책종합평가 총점은 전전년도 현장점검을 통해 결정된 종합평가 결과의 총점을 말한다.

다. 종합평가 결과의 총점에서 소방특별회계 소방정책사업비 전입금 확대 노력도, 위험물제조소등 출입 검사, 구조장비 보유율 및 노후율의 평점은 제외 한다.

라. 가목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경기북부소방본부 평가 결과 합의 평균 값, 경상남도는 창원소방본부 평가 결과 합의 평균 값을 적용한다.

15. 소방안전교육 확산 노력지수 산정 기준

가. 소방안전교육 확산 노력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소방안전교육 확산 노력지수}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안전교육 확산 노력도}}{\sum \text{시·도별 소방안전교육 확산 노력도}}$$

나. 소방안전교육 확산 노력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소방안전교육 확산 노력도} = \frac{\text{전전년도 해당 시·도의 소방안전교육 인원 수}}{\text{전전전년도 해당 시·도의 소방안전교육 인원 수}}$$

다. 소방안전교육 인원은 해당 시·도의 「소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인원을 말하며, 소방안전교육 인원 중 소방대원은 제외한다.

라. 인원 수는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방통계연보에 고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16. 화재예방지수 산정 기준

가. 화재예방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화재예방지수}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특별조사 건수}}{\sum \text{시·도별 소방특별조사 건수}}$$

나. 소방특별조사 건수는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건수를 말한다.

다. 현황은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방통계연보에 고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17. 안전시설 확충 노력지수의 산정기준

가. 안전시설 확충 노력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안전시설 확충 노력지수	=	$\frac{\text{전전년도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text{전전전년도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
--------------	---	--

나.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의 결산 지출액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3년 이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가목에 따라 산정된 지수의 1/3로 산정한다.

18. 재난안전 전담공무원 수의 산정기준

가. 재난안전 전담공무원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방재안전직렬의 정원을 말한다.

나. 지방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수는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8급 이상 지방방재안전직렬 공무원에게는 다음의 계수를 보정한다.

9급(1)	8급(3)	7급(5)	6급(10)	5급(20)
-------	-------	-------	--------	--------

19. 안전지수 개선지수의 산정기준

가. 안전지수 개선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begin{aligned}
& \text{안전지수 개선지수} = \\
& \left\{ \frac{(\text{해당 시·도의 자연재해 개선등급} - \text{자연재해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자연재해 개선등급})}{\sum \text{시·도별} (\text{자연재해 개선등급} - \text{자연재해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자연재해 개선등급})} \right. \\
& + \frac{(\text{해당 시·도의 화재 개선등급} - \text{화재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화재 개선등급})}{\sum \text{시·도별} (\text{화재 개선등급} - \text{화재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화재 개선등급})} \\
& + \frac{(\text{해당 시·도의 교통사고 개선등급} - \text{교통사고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교통사고 개선등급})}{\sum \text{시·도별} (\text{교통사고 개선등급} - \text{교통사고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교통사고 개선등급})}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사고 개선등급} - \text{안전사고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안전사고 개선등급})}{\sum \text{시·도별} (\text{안전사고 개선등급} - \text{안전사고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안전사고 개선등급})} \\
& \left. + \frac{(\text{해당 시·도의 감염병 개선등급} - \text{감염병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감염병 개선등급})}{\sum \text{시·도별} (\text{감염병 개선등급} - \text{감염병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도의 감염병 개선등급})} \right\} \\
& \times \left(\frac{1}{\sum \text{공표된 안전지수 등급 갯수}} \right)
\end{aligned}$$

나.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및 감염병 개선등급은 각각에 대한 전전년도 안전지수 등급에서 전년도 안전지수 등급을 뺀 값을 말한다. 다만, 안전지수 등급이 공표되지 않으면 해당 지수는 제외하고 산정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및 감염병에 대한 전전년도와 전전년도 안전지수 등급이 모두 1등급인 시·도의 개선등급은 각각에 대한 개선등급이 최대인 시·도의 개선등급의 1/2로 산정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및 감염병 개선등급은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산정된 개선등급의 1/3로 산정한다.

20. 안전신고 개선지수의 산정기준

가. 안전신고 개선지수는 전전년도의 안전신고 건수 중 시·도 공무원 1인당 안전신고를 "수용"한 건수를 말하며, 이 경우 안전신고를 "일부수용"한 건수는 1/2건으로 산정한다. 시·도 공무원은 전전년도 말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직 공무원의 정원을 합한 수를 말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전신고 개선지수는 가목에 따라 산정된 지수의 1/3로 산정한다.

21. 예산집행 노력지수의 산정기준

가. 예산집행 노력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 교부한다.

$\text{예산집행 노력지수} = \frac{1}{\text{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은 시·도의 수}}$

나. 불용액은 집행잔액 총액(집행사유 미발생, 세출절감, 낙찰차액, 시·도비 반환금, 잉여금 등)을 말하며, 교부받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불용액을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 비율에 따라 교부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 계획서에 포함되어 실제로 투자된 불용액은 제외하며, 재투자에 따른 낙찰차액은 다음연도 불용액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라. 전전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과 전전년도 해당 시도의 소방안전교부세 편성금액(과소편성¹⁾ 및 과대편성²⁾)의 차액은 불용액으로 간주한다.

※ 1)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거나 적게 편성하는 경우, 2)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 금액을 초과하여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

22.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의 산정기준

가.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 = \frac{(\text{전전년도 중점사업에 사용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 \times 2) + \text{전전년도 재량사업에 사용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text{전전년도 소방안전교부세}}$

나. 가목의 소방안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특수수요 소요 금액은 제외하고 산정하며,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 산정시 전전년도 이전에 발생한 이월액(사고이월¹⁾, 명시이월²⁾ 등)과 전전년도에 대상사업 외 사용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1)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소방안전교부세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2)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를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가목에 따라 산정된 지수의 1/3로 산정한다.

라. 세출예산 편성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임을 미표기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를 “0”으로 한다.

24. 재정자주도의 산정기준

- 가. 재정자주도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정자주도를 말하며, 해당 시·도의 재정자주도와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재정자주도를 순계(純計)하여 산정한다.
- 나. 재정자주도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1-가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3로 산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